

동두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	5-351
번호	

제출연월일 : 2009. 6. .

제출자 : 동두천시장

1. 제안이유

-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,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관련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 (안 제4조의2)
- 나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6개월 이상(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) 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,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11조)
- 다.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준용해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보수·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12조)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두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동두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”를 “동두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)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제9조 단서를 삭제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병역·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)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(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)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.

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

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.

제11조의2를 삭제한다.

제11조의3제2항 중 “제11조제1호”를 “제11조”로 하고, 같은조 제3항 중 “당연복직되며,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”를 “당연히 복직된다”로 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근무성적의 평정)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·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,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·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실과		총무과
입 안 자	실 . 과장 직위 . 성명	총무과장 홍 현 섭
	담당 . 팀장 직위 . 성명	시정담당 손 덕 환
	담 당 자 성명 . 전화	방 숙 경 860-2123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4조(임용자격) ① 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.</u> ②~③ (생략) <u>< 신 설 ></u> 제9조(당연퇴직)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한다. <u>다만, 동조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 <u>제11조(휴직)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, 다음 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</u> 1.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.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(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)	<u>제4조(임용자격) ① 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</u> ②~③ (현행과 같음) <u>제4조의2(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)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</u> 제9조(당연퇴직)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한다. <u>제11조(병역·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)</u> ① <u>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(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)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.</u> ② <u>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.</u>

현행	개정안
<u>제11조의2 (휴직기간)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.</u> 제11조의3(휴직의 효력) ① (생략) ②<u>제11조제1호</u>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,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.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<u>당연복직되며,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.</u> <u>제12조(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) ①</u>별정직공무원이 <u>제11조제1호의 사유로 6월 이상 휴직한 경우</u>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 휴직자 상당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.	<u><삭제></u> 제11조의3 (휴직의 효력) ① (현행과 같음) ②<u>제11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 ③ ----- -----<u>당연히 복직된다.</u> <u>제12조(근무성적의 평정) 임용권자는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 · 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,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 ·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.</u>